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병 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7
----------	------

발의연월일 : 2014. 1. 23.

발 의 자 : 김병철 의원

(찬성자 : 8 인)

1. 제안이유

가.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로 계기로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여 저탄소·친환경 녹색 수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글로벌 국제 도시로서 위상 정립을 위한 이미지 제고와 아울러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함.

나. 최근 전기자동차가 출시되는 등 전기차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많지 않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으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 저탄소·친환경 녹색 수도로서 이미지 제고(경쟁력 구비)
- 전기자동차 상용화에 대비 시민의 수요 반영 및 충전인프라 구축

2.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소유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 (안 제24조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합 의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와 소유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① ~ ② (생략)</p> <p><u><신 설></u></p>	<p>제24조(친환경자동차 구매·보급)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와 소유자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u></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p><input type="checkbox"/>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조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 제1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관련자료	해당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①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방안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8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가 발생시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발의한 의안이 시행 될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발생정도와 지원규모 등에 따라 예산 규모가 변동되어 기술적 추계가 곤란함

4. 작성자 : 건설교통위원회 김 병 철 의원